

우리는 일본 입관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일본에서는 2020 년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개최에 앞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인 가혹한 재류관리 하에서 커다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2012 년 7 월 9 일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외국인등록법에 있었던 주요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재류카드는 상시 소지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20 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시의 의무는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 증명서 양 쪽 모두에 지어져 있으며, 위반 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만엔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후 재류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집요한 취조가 행해진 케이스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문이나 DNA자료 채취까지 행해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일본인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로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의 신분을 갖는 자로서의 활동’을 6 개월 이상 행하지 않은 경우, 거주하는 곳이 바뀐 외국인이 90 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대신이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로 2014 년까지 49 건에 달하는 배우자의 재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법무성은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DV(Domestic violence: 가정 내 폭력)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민간단체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류자격 취소 제도의 확대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위조 채류자 대책’이라 칭하며 취소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입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갖지 않는 비정규 채류자는 지방자치체의 주민등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정규 채류자의 생존권, 건강유지, 노동, 교육에 관한 정부의 서비스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 가혹한 현실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관리 강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들이 2009 년 법안제출 때부터 줄곧 두려워했던 것들 뿐입니다.

입관법의 부칙 제 61 조에는 ‘정부는 새로운 제도로부터 3 년을 목표로, 실시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법률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15 년 7 월로 3 년을 맞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 의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래의 세 가지 점을 요구합니다.

- 1 재류자격 취소 제도를 폐지한다.
- 2 재류 카드의 상시 소지 제도를 폐지한다.
- 3 각종 신고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한다.

2015 년 6 월 1 일

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 (SMJ)

Catholic Commission of Japan for Migrants, Refugees and People
on the Move (JCaRM)

National Christian Coalition for Basic Law on Foreign Residents (Gaikikyo)

<http://repacp.org/aacp/changemigrationControl/index.php>